

정부 부처간 IT부문 업무 조정

중복 투자 및 영역 중복 조율

...정통부, IT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조정부처 역할

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.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.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.

특히, 정통부와 산자부, 정통부와 문화부,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.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.

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.

-편집자주-

IT분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

부처간 IT관련 업무영역 조정 합의사항(안)

재정경제부 · 문화관광부 · 산업자원부 · 정보통신부 · 공정거래위

목차

I.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

II. 합의안

1. 산자부 - 정통부 관련사항
2. 문화부 - 정통부 관련사항
3. 문화부 - 산자부 - 정통부 관련사항
4. 문화부 - 산자부 관련사항
5. 정통부 - 공정위 관련사항

III. 향후 업무중복시 적용할 조정원칙

1.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

- IT의 활용분야가 넓어지고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각 부처가 IT 관련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복 문제가 발생
 - 각 부처간 IT관련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점과, IT를 활용하여 여러 분야가 융합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, 업무 중복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
 - 이러한 업무 중복은, 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'정책의 質 제고' 차원을 넘어 서 영역 다툼으로까지 비추어지고 있는 실정
 - 실제로 상당수의 IT 관련 정책이 이원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민간의 불편을 초래 하고, 국가적인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상존
 - 따라서 각 부처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되 정부 전체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 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IT관련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고
 -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조정 요청한 18건에 대하여 5월이후 재경부를 중심으로 3차례의 관계차관회의와 7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안 마련
- 동 조정결과에 따라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. 향후 IT업무 중복이 다시 발생하 는 경우, 이번 조정 과정에서 마련한 조정원칙을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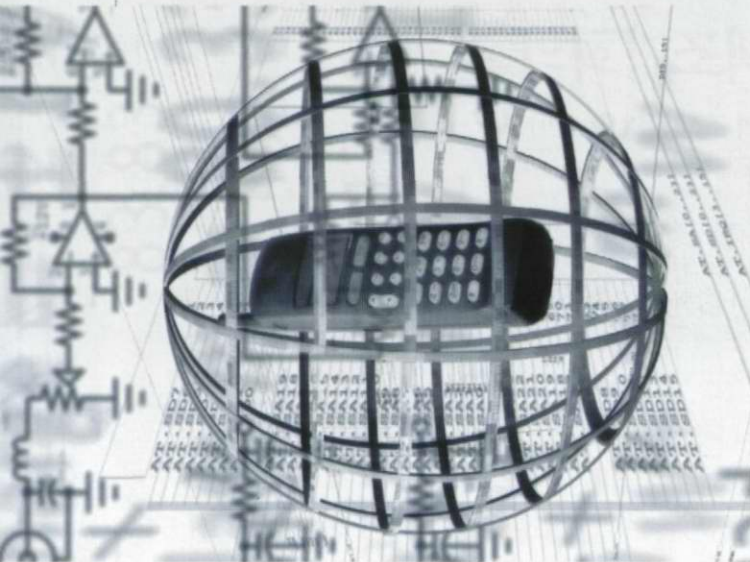
II. 합의안

1. 산자부 - 정통부 관련사항

(1)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체계

쟁점 사항 : 전자상거래 정책수립 추진체계(회의체 신설여부 등)

-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정책총괄을 담당하되, 향후 종합전략 수립시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
- 정통부는 직제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, 표준화 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되, 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
- 전자상거래 정책추진체계는 현 정보화추진체계(정보화추진위원회, 정보화전략회의)를 활용하며, 향후 별도의 회의체(예: e-biz 전략회의)는 신설하지 않음



- 전자거래정책협의회(위원장: 산자부 차관)는 전자거래정책심의회(위원장: 산자부 장관)로 격상시키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
- 향후 전자상거래 홍보·진흥을 위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추진

※ 양 부처 시행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양 부처 협의를 통해 시정

(2) 중소기업 IT화

쟁점 사항 : 1만개 중소기업 IT화(산자부)와 ASP시범사업(정통부)간의 조정

- 중소기업 IT화는 산자부와 정통부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,
- 산자부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IT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에, 정통부는 중소기업 IT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ASP 등 IT기업인 공급자 육성기반 사업에 중점을 둠

(3) IT 인력양성

쟁점 사항 :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사업의 추진방식 · 정통부 “기업의 e-business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”사업의 추진방식

- IT인력양성은 정통부가 주관하며, 정통부의 IT인력양성 종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부처 협조
-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하되, 전체적인 IT인력양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
- 정통부는 정보화추진기금운용계획의 “기업의 e-business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”사업(248억 원)은, 구체적인 계획수립시 산자부·중기청의 의견을 반영
- 사업내용이 산자부 등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

(4) ebXML 표준화

쟁점 사항 : ebXML 표준화 및 기술개발 관련 역할분담

- ebXML 표준화는 전자상거래 표준화통합포럼을 통하여 추진
- ebXML 관련 기술개발은 산자부와 정통부간 상호 협의하에 추진하되,
- 산자부는 전자문서, 전자카탈로그, 기업의 제조·판매와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, 정통부는 메시지전송, 보안·인증, 등록 저장소 관련 기술개발에 중점을 둠

(5) 전자화폐표준화

쟁점 사항 : 전자화폐 관련포럼의 통합 문제

- 전자화폐표준화포럼 참여자들은 전자지불포럼에 가입하고, 전자지불포럼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에 가입
- 산자부는, IC카드연구조합 등이 전자화폐표준화포럼을 해체하고 전자지불포럼의 전자화폐분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함
- 전자지불포럼은 중장기 사업계획 등 포럼가입 제안서를 통합포럼에 제출하여 회원으로 가입
- 통합포럼은 지불결제위원회의 기능을 전자지불포럼에 위임

- 전자지불포럼의 전자화폐분과위원회 구성(위원장 포함), 운영 등은 산자부가 주도
- 전자화폐표준화포럼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전자지불포럼 가입비를 면제(연회비는 부담)
- 전자화폐표준화포럼 참여자들의 대표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지불포럼 이사로 선임
- 가입비를 면제받은 전자화폐표준화포럼 참여자들이 전자지불포럼 이사진의 1/5정도를 담당

(6) IT 표준 제정

쟁점 사항 : 정보통신관련 국가표준의 중복(KS와 KICS)

- 정보기술분야의 표준은 한국산업규격(KS)체제로 일원화
- 정통부관련 부회·전문위원회의 구성시, 원칙적으로 정통부 추천위원을 위촉하는 등 정통부 역할을 제고
- 한국정보통신표준(KICS)의 정보기술분야 표준은 삭제
- 정보기술분야가 아닌 통신분야의 표준은 현행대로 KICS체제를 유지

(7) 소프트웨어 품질인증

쟁점 사항 : S/W 품질인증의 중복

- 정통부는 S/W전반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
- 산자부는 산업용기기 전용 S/W의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
- 산업용기기 전용 S/W의 범위는 산자부와 정통부가 협의하여 결정

(8) 음성정보산업

쟁점 사항 : 관련기술개발의 중복, 관련 협회의 역할 조정

- 정통부는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과 정보통신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을 담당
- 산자부는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의 응용기술개발(엔진개발 등 시스템과 밀접히 연관된 기술개발)을 담당
- 두 부처는 기술개발 사업추진 시 중복여부 등을 협의
- 정통부는 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기술개발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개발 추진
- 한국음성정보기술협회(산자부)와 한국음성정보처리산업협회(정통부)는 두 부처의 업무영역에 맞추어 역할 분담 및 명칭 조정

(9) 비메모리 반도체산업(시스템 칩 산업)

쟁점 사항 :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중복여부·시제품개발사업의 중복 및 관련 위원회의 중복문제

-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인 바, 두 부처가 협의 추진
- 시제품 제작사업의 추진체계인 산자부의 반도체혁신협력사업 운영위원회와 정통부의 ASIC산업위원회의 영역의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두 부처가 공동운영

(10) IT 벤처 해외진출 지원

쟁점 사항 : 산자부의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설치추진여부 및 명칭

- 정통부는 해외IT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
- 산자부·중기청은 IT기업과 비IT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해외벤처지원센터 설립 추진
- 향후 설치될 지원센터 명칭에 "IT"를 사용하지 않음

(11) Post-PC 산업

쟁점 사항: Post-PC 산업 지원 주무부처

- 정통부는 Post-PC 분야의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담당
- 통신 또는 정보제공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단말기(PDA, 모바일컴퓨터 등)의 개발을 포함
- 산자부는 일반산업용기기 및 가전제품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기 및 부품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담당
- 통신 또는 정보제공이 주된 기능이 아닌 단말기의 개발을 포함

2. 문화부 - 정통부 관련사항

(1) 디지털콘텐츠 보호

쟁점 사항: 디지털콘텐츠 제작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 주관·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정여부

-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대한 투자는 문화부가 정통부와 협의 하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
-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을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, 문화부는 동법 제

정에 적극 협조

(2) DOI(Digital Object Identifier) 관련

쟁점 사항 : DOI시스템구축 중복문제 · 국제DOI재단(IDF)의 등록 에이전시(Registration Agency)지정 문제 · 관련 기술개발의 중복 · 정통부 산하기관의 관련 활동 범위

- 정통부가 전반적인 DOI 체제구축을 담당하고, 문화부 등 관계부처는 동 체제에 참여
- 문화부와 정통부는 정통부개발 DOI 시스템이 문화분야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평가
- 정통부는 동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보완필요사항이 드러나면, 문화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

· 각 부처가 담당하는 응용 분야의 사업은 추진하지 않음

(3) e-Book, (4) 온라인애니메이션

쟁점 사항 : 관련 기술개발의 중복 · 전시회 등 대외행사의 중복

- 문화부는 관련 콘텐츠육성과 콘텐츠개발 인력양성을 담당
- 아울러 정통부가 담당하는 기반기술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용기술개발 추진 - 현재 중복추진중인 기술개발 사업은 중단
- 정통부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IT관련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반기술개발 · 인력양성 추진
- 각종 국내외 전시회 · 대회 · 시상 등 대외행사는,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 하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되, 원칙적으로 유사한 대회 등은 통합



- 국제 DOI 재단(IDF)의 등록 에이전시(RA)는 정통부가 국가별 RA로 지정받는 것으로 추진하며, 문화부의 장르별 RA는 추후 필요시 정통부와 협의하에 추진
- 정통부의 DOI 체제하에서 문화분야의 부호할당, 등록 등은 문화부가 담당
- 문화분야의 등록 등 DOI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, 관련기관간 협의하여 분배
- 정통부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반 기술개발을 추진
- 문화부는 정통부가 담당하는 기반기술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며, 정통부는 적극 지원
-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 정통부 산하 기관단체들은 기반기술 등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추진

3. 문화부 - 산자부 - 정통부 관련사항: 게임

쟁점 사항 : 관련 기술개발의 중복 · 전시회 등 대외행사의 중복 · 게임단지 조성 중복 · 산하 게임관련센터의 기능 중복

- 문화부는 게임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로서 게임 콘텐츠를 주관 · 기획, 시나리오, 사운드, 동영상, 컴퓨터 그래픽 등 게임콘텐츠개발 인력양성을 담당
- 아울러, 산자부와 정통부가 담당하는 기반기술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, 응용기술개발 추진
- 현재 중복 추진 중인 기술개발사업은 중단
- 산자부와 정통부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반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
- 산자부는 아케이드 게임기 · 가정용 게임기 등에 필요한 기반 기술개발 · 인력양성 주관
- 정통부는 온라인 · PC용 게임 등에 필요한 기반기술개발 · 인력양성 주관
- 각종 국내외 전시회 · 대회 · 시상 등 대외행사는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하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되, 원칙적으로 유사한 대회 등은 통합
- 국외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서는 KOTRA가 각종지원 추진
- 게임산업단지 조성 · 관리는 산자부가 담당하되, 위치 · 입주 업체 등에 대한 문화부, 정통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
- 문화부의 문화산업단지는 게임이외의 분야로 특화추진
- 게임종합지원센터(문화부),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(산자부),

게임기술개발센터(정통부) 등은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맞추어 역할 분담

4. 문화부 - 산자부 관련사항: 캐릭터

쟁점 사항 : 전시회 등 대외행사의 중복 · 관련 협회의 역할 중복

- 문화부는 캐릭터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창작 · 라이선싱을 주관하고, 상업화는 산자부가 주관
- 각종 국내외 전시회 · 대회 · 시상 등 대외행사는,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하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되, 원칙적으로 유사한 대회 등은 통합
-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(문화부)와 한국캐릭터산업협회(산자부)는 두 부처의 업무 영역에 맞추어 역할 분담

5. 정통부 - 공정위 관련사항: 개인정보보호관련 입법방안

쟁점 사항 : 개인정보보호의무 이행여부 조사 및 과태료, 시정명령의 중복 규제

- 정통부는 일반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로 역할
-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사권, 과태료부과권, 시정명령권 등은 정통부가 보유
- 오프라인 사업자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여부는 동 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결정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기본틀 내에서, 거래분야별 특수사항은 개별법에 규정
- 다만, 개인정보보호가 소비자보호와도 일부 관련되고, 두 부처가 별도 조사시 민간의 불편이 큼을 감안하여, 두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
- 두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조사(정통부), 소비자보호조사(공정위)시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
-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사와 과태료 부과권, 시정명령권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하고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반법과 개별법 모두에 두도록 함

III. 향후 업무중복시 적용할 조정원칙

1. 정부조직법 · 각 부처 직제,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조정

- 정부조직법, 직제(대통령령)상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 부처를 주관부처로 함
 - 부처간 off-line 업무분장과 on-line 업무분장이 가급적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
 - 민간이 가급적 복수 부처로부터 규제받지 않도록 함
 -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을 어느 부처가 먼저 추진하였는지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음
2.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의 종합조정부처로서 역할
 - 여러 부처의 소관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개발, 인력양성 등 인프라 성격의 정책을 주관
 3.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정보화를 담당
 - 산업정보화, 문화정보화 등 특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응용기술개발 · 인력개발 · 지원사업 등은 동 분야의 소관부처가 주관
 4. 정통부는 관계부처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
 - 관계부처는 정통부가 담당하는 기반기술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관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며, 정통부는 적극 지원
 5. 정보화교육을 포함한 모든 IT인력양성은 정통부가 주관하는 IT인력양성 체제하에서 종합 · 조정
 6. 각 부처 산하의 관련 협회, 단체, 센터 등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영역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고, 필요시 명칭도 이에 부합되게 조정
 - 타 부처 산하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회 등이 있는 경우, 별도의 협회 등을 신설하지 않고 를 활용
 7. 향후 각 부처는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 하에 IT관련 정책을 추진